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21 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김상욱·김선교·박준태

박덕흠 • 김장겸 • 서범수

성일종 • 조지연 • 박수민

조은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, 대의원회 선출,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,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, 금고 이사장 선거를 농협·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

당초 이 법 부칙에 동시 이사장 선거일을 구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에 명시된 농협·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명시하였으나, 2024년 1월 30일 「공공단체

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이 선거일을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개정함으로써 양 법간 선거일의 불일치가 발생하여,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 금고법의 취지와 달리 내년 동시 이사장 선거일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3월 5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 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, 제5조 및 제6조)

법률 제 호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중 "202 5년 3월 12일"을 "2025년 3월 5일"로, "두 번째"를 "첫 번째"로 하고, 같은 부칙 제5조 중 "2025년 3월 12일"을 "2025년 3월 5일"로 하며, 같은 부칙 제6조 중 "2025년 3월 12일"을 "2025년 3월 5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개 정 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(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 제3조(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 에 관한 특례) ①·② (생 략) 에 관한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(3) -----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는 2025년 3월 12 ----- <u>20</u>25년 3월 5일 일에 동시 실시하고, 이후 임 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 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---- 첫 번째 -----실시하다. ④ ~ ⑨ (현행과 같음) ④ ~ ⑨ (생 략) 제5조(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관 제5조(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관 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한 경과조치) -----2025년 3월 12일 전까지 실시 2025년 3월 5일 -----하는 이사장의 선출에 관하여 는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6조(이사장 선거의 구·시·군 제6조(이사장 선거의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<u>20</u> 경과조치) ----- <u>20</u>

<u>254</u>	<u>년</u> 3	월	<u>12일</u>	전	까지	실시	하
는	이지	사장	선거	에	관하	여는	제
233	조의	2(>	₩643	조의	2제6	항에	서
군성	용하	느	경우	는	제외	한다))의
개기	정규?	정에	도	불구	하고	종전	의
규7	첫 에	प्र	르다.				

25년 3월 5일	